

담양군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

「담양군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5. 10. 2.

담양군의회 의장



1. 조례명 : 담양군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

2. 제안이유

- 「노인복지법」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되지 않은 미등록 경로당에서 자율적인 친목도모, 취미활동, 공동작업장 운영 및 기타 여가활동을 하는 노인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
- 미등록 경로당 :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되지 않은 시설임에도 노인들이 자율적인 친목도모, 여가활동 등을 하는 장소 중 담양군수가 인정하는 시설

나. 지원대상 및 범위(안 제5조)

- 냉·난방비, 양곡비 등 운영비
- 건강보조기구, 정보화 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비
-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·여가 프로그램 운영비
- 이용 회원들의 급식 지원을 위한 물품
- 냉·난방기기 등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물품
- 그 밖에 군수가 미등록 경로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4. 입법예고 기간 : 2025. 10. 2. ~ 10. 10.(8일간)

5. 의견제출

- 이 제정안에 대하여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담양군의회 의장(참조 : 의회사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에는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

다. 보내실 곳 : 담양군의회 의회사무과

-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
 - 전화 : 061-380-3507~8(FAX 061-380-3590)
- 라. 의견제출 방법 : 전화, FAX, 직접방문, 우편

6. 조례안 : 붙임 참조

□ 의견제출 서식

의견서		
1. 규칙안	담양군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	
2. 의견	관련조문	의견
3. 기타		
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 2025년 10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(전화 :) 성명 (서명 또는 인) 담양군의회 의장 귀하		

담양군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 도모, 취미활동,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 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시설인 미등록 경로당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미등록 경로당”이란 「노인복지법」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노인 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되지 않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담양군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 도모, 취미활동·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담양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가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.

제3조(책무) 군수는 담양군 관내에 있는 미등록 경로당이 「노인복지법」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지원 계획의 수립) 군수는 미등록 경로당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제5조(지원 대상 및 범위)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담양군 관내에 있는 미등록 경로당으로 한다.

② 군수는 미등록 경로당의 시설 개선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

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냉·난방비, 양곡비 등 운영비
 2. 건강보조기구, 정보화 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비
 3.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·여가 프로그램 운영비
 4. 이용 회원들의 급식 지원을 위한 물품
 5. 냉·난방기기 등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물품
 6. 그 밖에 군수가 미등록 경로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③ 최초 지원일로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.

제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